

-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-
자치법규 제·개정 정비 검토결과

연번	조례명	검토부서	적정여부	검 토 결 과
1	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(종로구)	어르신 복지과	제정 가능	○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여를 위해 필요
2	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보장 조례 (영등포구)	어르신 복지과	제정 가능	○저소득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소외 및 방치 노인 급증 예상 ○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, 노인학대 신고 접수센터 운영 필요 ○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
3	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(양천구)	건강증진과	제정 가능	○예방 중심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건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통해 관리 필요
4	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(서초구)	여성가족과	제정 가능	○제정 2015.11.20. 조례 제1110호
5	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(노원구)	건설관리과	장기 검토	○노점 허가·허용제를 전제로 실효성 및 주민 설득 단계적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○노점 허가·허용제 시행에 따른 통행 불편 상황 고착 및 주변 상인에 대한 역차별 등 민원발생 우려
6	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(양천구 외 9개구)	감사담당관	제정 불가 (인프라 부족)	○인권업무 전담팀 구성 필요 ○인권업무 인력 확보 후 조례 제정 검토
7	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(성북구)	자치행정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「강북구 자치회관 운영조례」에 자치회관 등 공공시설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8	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(관악구)	교육지원과	제정 불가 (인프라 부족)	○평생학습도시 미지정, 평생학습관 미운영 등 인프라와 예산 등 여건 열악 ○‘다산아카데미’운영 등을 통한 장기적 검토 필요
9	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(성북구)	교육지원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「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에 아동 이익에 대한 구민 의견수렴 등 내용 포함 ○필요시 위 조례에 아동권리 영향평가 세부내용을 보완

연번	조례명	검토부서	적정여부	검 토 결 과
10	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(광진구)	세무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 「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우리구 성실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·표창하고 있음
11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(구로구)	생활보장과	제정 불가 (중복 지원)	○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은 “한국장애인고용공단”에서 지원하고 있음
12	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(동작구)	생활보장과	제정 불가 (중복 지원)	○ “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”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
13	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 (금천구)	생활보장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 지침 규정 내용으로 조례제정 불필요
14	여성장애인 임신·출산양육 지원 조례 (서울시)	생활보장과	제정 불가 (중복 지원)	○ 서울시에서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되고 있어 우리구 조례 제정시 중복지원이 되며 예산이 수반 필요
15	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(동대문구)	생활보장과	제정 불가 (인프라 부족)	○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여부에 따라 조례 제정 검토
16	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(중구 외 3개구)	여성가족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 식품 유통 전 검사 권한은 광역단체(서울시)에 있어 자치구에서의 조례 제정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○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까지 검토 필요
17	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(노원구)	여성가족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및 「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국/시비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음
18	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서울시)	도시계획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는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구 직접 시행사업이 없음
19	빈집 정비 지원 조례 (관악구)	디자인 건축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 사설위험시설물 중 공가부분에 대해 연 5회 안점검점 및 보수·보강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○ 빈집발생지역이 대부분 정비예정구역 및 재개발·재건축지역이므로 주택과 주관 추진 필요
20	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(성동구)	디자인 건축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 「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」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연번	조례명	검토부서	적정여부	검 토 결 과
21	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(은평구)	디자인 건축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시 방법창 및 가스배관 보호덮개 등 설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음
22	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(성북구 외 5개구)	환경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라 소음, 진동 행위 규제 및 조치 가능 ○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 없는 규제 강화 우려
23	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(송파구)	도로관리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‘내집앞, 내 점포 앞 눈치우기’ 및 「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추진 불필요
24	어린이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(용산구)	교통행정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우리구는 「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(2014.11.28제정)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한 조항이 있음 ○「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」를 제정한 8개 자치구는 별도의 「교통안전 조례」가 없음
25	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(양천구)	교통행정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자동차관리사업은 정비업, 매매업, 폐차업으로 구분되나, 우리구는 카센터 수준의 정비업소만 있음 ○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정비업자들의 이득이 없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쟁효과도 미미함
26	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(중구)	보건위생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「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건강음식점 인증 및 홍보, 표지판 제작 등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 불필요
27	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(양천구 외 4개구)	보건위생과	제정 불가 (인프라 없음)	○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예산 수반 필요 ○서울시 식생활 기본교육 수립 등 추이에 따라 재검토 예정
28	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(송파구)	의약과	수용 불가 (유사 조례)	○환경부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」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절차에 관한 내용을 기시행하고 있음
29	산모·신생아건강 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(도봉구)	지역보건과	제정 불가 (유사 조례)	○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」에 의한 예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별도의 조례 불필요
30	소아당뇨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 (양천구)	지역보건과	제정 불가 (실효성 없음)	○「모자보건사업 지침」에 의한 대사이상환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예외대상자인 소아당뇨에 대한 지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별도의 조례 불필요